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34870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1. 27.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2. 23. 접수 제5087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10. 30.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20. 1. 20.부터 신용카드대금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16. 제주지방법원 2020차전1302호로 D은 피고에게 12,146,685원 및 그 중 4,071,959원에 대하여는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68%, 3,3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394,720원에 대하여는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 3,756,091원에 대하여는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20. 5. 16.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2019. 12. 20.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9. 12. 23.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508794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D과 1996. 4. 10. 혼인하였다가 2019. 12. 20. 협의이혼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한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 가) 관련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D이 협의이혼한 날 체결된 점, 피고는 D과의 혼인생활을 하며 두 자녀의 양육비 등 생계를 피고의 소득으로 충당하여 D은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